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104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8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, 현행 기준에 맞게 조례에 규정된 법령 명칭 정정 및 용어 정리,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양성평등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40조의2)
- 나. 현행 상위법령 명칭 정정 등 용어 정리(안 제18조제4호, 안 제40조제1항, 안 제54조제10호)
- 다. 기금의 사용범위 확대(안 제41조의2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2조
 - 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1항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4. 7. 11.~ 7. 31.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4호 중 “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”을 “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”으로 한다.

제40조제1항 중 “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2조제5항”을 “법 제42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40조의2 중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41조제2항 중 “이자수입금의 범위”를 “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”로 한다.

제54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0.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경제활동 참여촉진)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「<u>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</u>」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8조(경제활동 참여촉진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<u>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</u>」-----</p> <p>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0조(기금의 설치) ①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및 「<u>양성평등기본법</u>」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·운용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0조(기금의 설치) ① -----</p> <p>----- <u>법</u></p> <p><u>제42조제5항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0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<u>2024년 12월 31일까지</u>로 하되,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</p>	<p>제40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2029</u></p> <p><u>년 12월 31일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<p>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제41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</p> <p>1. ~ 6. (중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<u>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</u> 하며,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.</p>	<p>-----.</p> <p>제41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.</p> <p>1. ~ 6. (중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<u>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</u> 하며,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.</p>
<p>제54조(사용료 등의 감면·할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「<u>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</u>」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</p> <p>11. (생략)</p>	<p>제54조(사용료 등의 감면·할인) 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「<u>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</u>」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</p> <p>11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김지은
연 락 처	02-3153-8924